##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40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신동욱ㆍ서지영ㆍ박준태

유용원 • 이종배 • 엄태영

박상웅 · 김은혜 · 김승수

인요한 • 구자근 • 조배숙

조은희·최보유·김 건

강명구 · 김도읍 의원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심판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이나, 반대로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국정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서 알 수 있듯 법적 요건이 미비한 탄핵소추가 반복되면서 공직자들의 직무 정지 및 행정기관 기능 마비 문제가 발생하고,

같은 기간 약 4억 6,000만 원의 국민 세금이 탄핵심판 절차에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대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 고 불필요한 공적 비용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에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4조의2(탄핵소추에 대한 비용 부담) 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국회의원 또는 그가 소속된 정당은 탄핵심판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 범위,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연대 부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134조의2(탄핵소추에 대한 비
	용 부담) 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진행된 탄핵심판
	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탄핵소
	추를 발의한 국회의원 또는 그
	가 소속된 정당은 탄핵심판 절
	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 범위,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연대 부담에 관해
	서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
	416조까지,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u> 준용한다.</u>